구 분 면제･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･감면의 방법 ㉒ 금융중심지 창업 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(조특법§121의21) - 금융중심지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) 내에서 금융･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\* 2010.5.14.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-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3년 → 법인세：100% 감면 -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→ 법인세：50% 감면 ㉓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(조특법§121의22) -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 의료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-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식품 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-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3년 → 법인세：100% 감면 -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→ 법인세：50% 감면 ㉔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의 법인세 면제 (조특법§141의2) -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 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 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- 법법§98①에 따른 법인세 면제 \* 2019.1.1. 이후 지역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, 입주하는 법인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감면 (대상 지역특구) 연구개발특구, 제주 투자진흥지구･첨단과학기술단지, 아시아문화중심도시, 금융중심지, 첨단의료복합단지, 국가식품클러스터 - 투자누계액 50%＋상시 근로자 수×1,500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 근로자 2,000만원) - 100%감면기간(최저한세 적용 제외), 그 외 감면기간(최저한세 적용) :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